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제정 2014. 2.28. 본부장결재 대전충남업무팀- 283
개정 2014. 5.15. 본부장결재 대전충남업무팀- 545
2014. 8.27. 본부장결재 대전충남업무팀- 947
2015. 4.29. 본부장결재 대전충남업무팀- 559
2015. 6.26. 본부장결재 대전충남업무팀- 801
2015.10.22. 본부장결재 대전충남업무팀-1361
2015.12.14. 본부장결재 대전충남업무팀-1596
2016. 3.30. 본부장결재 대전충남업무팀- 327
2016. 6.28. 본부장결재 대전충남업무팀- 582
2017. 6.28. 본부장결재 대전충남업무팀- 612
2017. 8.31. 본부장결재 대전충남업무팀- 877
2017. 9.28. 본부장결재 대전충남업무팀- 994
2018. 5.17. 본부장결재 대전충남업무팀- 458
2019. 7. 5. 본부장결재 대전충남업무팀- 692
2019. 8.29. 본부장결재 대전충남업무팀- 880
2019.12.11. 본부장결재 대전충남업무팀- 1269
2021.1.28. 본부장결재 대전충남업무팀- 91
2021.7.5. 본부장결재 대전충남업무팀- 553
2021.8.30 본부장결재 대전충남업무팀-73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해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이하 "대전충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대상 대출실적) 대전충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출실적을 대상으로 배정한다.

1.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이하 "관할지역"이라 한다) 소재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 대출실적
2.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관할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 대출실적

제3조(지원대상) ① 대전충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지원대상업체"라 한다)으로 한다.

1. 벤처기업

2. 혁신기업
3. 녹색기업
4. 연구개발우수기업
5. 추천기업
6.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7.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8. 전입기업
9. 소재·부품 생산기업
10.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11. 명절·재해 자금 등
12. 기타 지원기업
13. 경기부진업종 ·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② 지원대상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구분 운용) ① 대전충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전략지원한도, 특별지원한도 및 일반지원한도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② 전략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1. 제3조 제1항 제7호
2. 제3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며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농림어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03에 해당)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의 농림축산어업자 및 농어업법인 포함)

③ 특별지원한도는 제3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④ 일반지원한도는 제3조 지원대상 중에서 제2항의 전략지원한도 및 제3항의 특별지원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여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전략지원한도 및 제6조에 따른 특별지원한도에 대해 배정하고 남은 한도 범위내에서 배정한다.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중 대전충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수혜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금리감면이 없는 대출은 대출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전략지원한도 배정) ① 본부장은 전체 한도 중 특별지원한도를 제외한 한도의 일부를 지역별 경제사정,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전략지원한도는 제1항의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 이내에서 금융기관 대출 취급

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의 업체당 배정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최대배정가능액”이라 한다)을 배정한다.

③ 전략지원한도는 업체당 15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3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

④ 제1항의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소진하여 전략지원한도 지원대상업체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을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해당 대출실적에 대하여 50% 이내로 일반지원한도를 비례 배정하며 신용등급 및 업종제한은 제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특별지원한도 배정) ① 본부장은 특별지원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계획을 제출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지원한도는 금융기관이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

③ 특별지원한도는 업체당 1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

④ 특별지원한도의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⑤「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B2512-2)에 따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병원 및 의원(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71101업종, 71102업종, 71201업종, 71202업종, 861~862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특별지원한도 총 운용규모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하여 50% 이내로 일반지원한도를 비례 배정한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일반지원한도 배정) ① 일반지원한도는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서 최대배정가능액을 기준으로 비례배정한다.

② 일반지원한도는 업체당 7.5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15억원) 이내에서

배정한다.

③ 일반지원한도의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2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은 일반지원한도의 배정에도 적용한다.

⑤ 제5조 제4항에 의해 일반지원한도를 배정할 경우 해당 대출실적은 만기전에 대환 등을 통해 전략지원한도 대출실적으로 전환할 수 없다.

⑥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배정한 후 미소진한도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별 배정액의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

제8조(중소기업 지원자금 수혜의 제한) ①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지원기간 만료 후에도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금대출의 최초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기간이 5년(60개월)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2년간 중단한다. 다만, 지원기간동안의 연환산 월평균 지원액의 누적 금액(지원기간동안의 월별 지원금액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5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실적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신규 지원이 중단된 업체에 대해 신규지원을 재개하였을 경우에는 신규지원 재개시점부터 새롭게 지원실적을 계산한다. 다만, 신규지원 중단기간동안 자금을 수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을 신규지원 재개시점 이후의 지원실적에 포함한다.

④ 본부장은 자연재해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명절자금 수혜업체는 제외)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신규지원 중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명절·재해자금 및 기타지원자금) 본부장은 제3조 제1항 제11호(명절·재해자금 등) 및 제12호(기타 지원기업) 지원시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 제외 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대전충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3. 다른 규정 등에 따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이차보전 대출 제외)
5. 폐업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출금
6. 부동산업, 유흥업 등 <별표 2>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금
7. 한도거래대출 등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금

제11조(자료제출) ① 금융기관이 대전충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요약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취급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4.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5. 기타 본부장이 요구하는 배정 관련 자료

②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지원한 대출의 만기도래, 중도상환, 원 차주의 폐업업체 또는 최종부도거래처 지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회수 및 배정) 본부장은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중 각 금융기관에 배정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함과 동시에 제11조의 보고서 및 자료에 의해 산정한 당월중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결제모점장 앞으로 일괄 배정한다.

제13조(제재) ① 본부장은 제11조에서 정한 보고서 및 서류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작성·제출하여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것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의 회수
2.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 적수의 2.5배 이내에서 위규사유별로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도 감축

② 제1항의 제재 등으로 회수된 한도는 제재를 받지 않은 여타 금융기관에 직전 3개월간 평균 최종배정액의 금융기관별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

제14조(기타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4. 2.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한도배정은 금융기관의 2014년 3월말 실적이 반영되는 2014년 5월 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에 배정된 대전충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② 2013년 7월말 이전에 취급된 기존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대출로서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만기상환시까지 지원한다.

부 칙 (2014. 5. 1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한도배정은 금융기관의 2014년 5월말 실적이 반영되는 2014년 7월 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에 배정된 대전충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14. 8. 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5. 4. 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취급한 신지역특화산업에 대한 대출은 대출만기시까지 지원한다.

부 칙 (2015. 6. 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5. 10. 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1월 2일(2015.11월 한도 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배정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5. 12. 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월 1일(2016. 3월 한도 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배정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6. 3.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4월 1일(2016. 6월 한도 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배정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배정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7. 6.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7. 8. 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부여한 금융기관별 사전한도는 2017년 12월 배정시까지 적용한다.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7. 9.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8. 5. 1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2018년 9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9. 7. 5.)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2019년 10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2>, <별표1-3>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5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9. 8. 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9. 12. 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1. 1.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1. 7. 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1. 8.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중소기업지원자금 지원대상업체 세부 선정기준

코드	지원부문	지원범위[1)2)]
A2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 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으로 창업 후 7년이 초과한 기업
A3	혁신기업	①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 획득기업으로 창업 후 7년이 초과한 기업 ②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 획득기업으로 창업 후 7년이 초과한 기업 ③ 창업 후 7년을 초과한 기업이 해당업체의 사업목적과 관련 있는 특허를 대출취급일 기준 3년 이내에 취득 또는 보유한 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인정기업 o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경영혁신형기업(Main-Biz) o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기술혁신형기업(Inno-Biz)으로 창업 후 7년이 초과한 기업
A4	녹색기업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거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거 환경성적표지 (EDP : Environmental Declaration of Products)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에 의거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④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에 대해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를 부여한 기업 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으로 등록한 기업 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의거 '녹색기술·녹색사업· 녹색제품 적합성 인증'및'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⑦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받은 기업
A5	연구개발 우수기업	□ 창업 후 7년이 경과한 업체로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2%를 초과하는 기업. 다만,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E, G~N, P~S 업종)의 경우 0.5%를 초과하는 기업 * 연구개발비 = 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 전년 대비 증가액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A6	추천기업[3)]	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금융기관 선정 유망중소기업 ②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 ③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

코드	지원부문	지원범위[1)2)]
A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 <별표 1-1>의 지역특산품 생산 및 관련기업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① <별표 1-2>의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4)] ② <별표 1-3>의 대전·세종/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중점지원사업 참여기업[5)] ③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6)] o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대전·세종·충남)가 선정한 고용창출 우수중소기업 o 대출취급월 현재 직전 1년간 상용근로자의 평균 고용증가율이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이고 평균 고용인원이 3인 이상 증가한 기업
A9	전입기업	□ 외국인투자 전용산업단지·지방자치단체 조성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타지역에서 대전충남본부 관할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중 이전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제조업(C) 영위기업에 한함]
A11	소재·부품 생산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한 소재·부품 전문기업
A13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농림어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03에 해당)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의 농림축산어업자 및 농어업법인 포함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A14	명절 및 재해 자금 등	① 설, 추석 등 자금성수기에 본부장이 특별운전자금의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② 수재, 화재 등의 재해 및 노사분규 장기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부장이 특별자금의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A15	기타지원기업	□ 기 지원부문 중 상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원기업
A16	경기부진 및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① 경기부진업종: 음식·숙박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 55~56, 주점업 제외), 도소매업(45~47), 여행업(752) ② 경기민감업종: 조선업(311), 해운업(501~502)

주 : 1)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일자가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2) 해당 기업이 복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 사업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정함.
3) 유관기관 추천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 대전충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관할지역에 소재하고 대전테크노파크, 세종테크노파크 및 충남테크노파크의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 다만,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확인서는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에스씨아이평가정보)이 발급한 신용평가서(해당 기업의 주업종 기재)로 대신할 수 있다.
5) 관할지역에 소재하고 대전·세종/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중점지원사업 참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6)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전략지원한도의 배정에도 적용

<별표 1-1>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 지역특산품

지 역	특 산 품
공주시	밤
서산시	6쪽마늘, 어리굴젓
태안군	6쪽마늘
논산시	딸기
금산군	인삼, 약초
서천군	세모시
홍성군	새우젓

*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지원하는 특산품 생산 및 관련기업은 해당지역과 인접하는 시·군에 소재하는 기업을 포함

<별표 1-2>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지역주력산업

(대전광역시)

주력산업명	KSIC	세세분류업종명
차세대 무선통신융합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직접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1220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주력산업명	KSIC	세세분류업종명
지능형로봇산업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25942	그 외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바이오메디컬 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213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세종특별자치시)

주력산업명	KSIC	세세분류업종명
스마트시티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4100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18200	기록매체복제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스마트그린융합 부품·소재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10302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충청남도)

주력산업명	KSIC	세세분류업종명
차세대디스플레이 산업(핵심)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차세대디스플레이 산업(연관)	23122	디스플레이장치용 유리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30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친환경모빌리티 산업(핵심)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친환경모빌리티 산업(연관)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주력산업명	KSIC	세세분류업종명
스마트 휴먼 바이오산업 (핵심)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스마트 휴먼 바이오산업 (연관)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5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10792	차류 가공업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801	배합사료 제조업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별표 1-3>

대전·세종/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중점지원사업

분 야	중점지원사업	비 고
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공공부문에 한함
	공정 품질 기술개발사업 / 제품·공정 기술개발사업	
	산학연 Collabo R&D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제조중소기업 글로벌역량강화	
수출지원	수출역량강화사업 /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컨설팅지원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역점사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사업/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 연도별 자체 역점사업
	성공-창업기업간 멘토링 활성화사업	〃

<별표 2>

대전충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업종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10차
부동산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주점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6213 생맥주전문점 56219 기타주점업
무도장	91291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미용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 미용업
안마업	96122 마사지업
금융관련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별표 3>

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

위규 사유	한도감축 배수
대기업[1]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	2.5배 이내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1.5배 이내[2]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	2.0배 이내

주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2) 기업체의 폐업신고 지연(또는 소급) 사실을 금융기관이 소명한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일로부터 지연(또는 소급)신고일까지는 1배수 차감

<별지 제1호 서식>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요약보고서

(년 월말 현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 귀하

은행 부(점)장(인)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략지원부문		특별지원부문	일반지원부문		계
			시설자금	운전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전월말 기준		건 수						
		지원금액						
월중 변동 내역	신 규[1]	건 수						
		지원금액						
	만기상환[2]	건 수						
		지원금액						
	중도 전액상환	건 수						
		지원금액						
	중도 일부상환	건 수						
		지원금액						
	지원종료	건 수						
		지원금액						
	기 타	건 수						
		지원금액						
금월말 기준		건 수						
		지원금액						
증 감		건 수						
		지원금액						

주 : 1) 대환, 만기연장 포함
2) 대환, 만기연장을 한 경우 기존 취급분은 만기상환에 준하여 보고

붙임 : 1.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 1부.
2.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 1부.
3.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1부. 끝.

(작성자 직위 : 성명 : ☎)

<별지 제2호 서식>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

(　　년　　월말 현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 귀하　　**은행　　부(점)장(인)**

Ⅰ. 신청내용

대 출 취 급 액	백만원	대 출 기 간	~
금 리	고정 :　　%	대출계좌번호	
	변동 :　　% *(기준금리　% + 가산금리　%)*	자 금 종 류	□ 운전자금 □ 시설자금
채권보전형태	□ 순수신용　□ 담보 □ 보증기관 보증　□ 혼합	신 청 사 유	□신규　□대환 □만기연장　□지원연장
지 원 부 문	△△△△ (신청 전산코드 :　　)	전략지원부문 해 당 여 부	□해당　□비해당
취급점 및 담당자	○○지점,　○○○ (☎　　, FAX　　)	특별지원부문 해 당 여 부	□해당　□비해당

Ⅱ. 업체현황

업 체 명		대표자 확인	(인)
주 소	(☎　　, FAX　　)		
자 금 담 당 자		e-mail	
업종명 (KSIC 5자리코드)	△△△△ (□□□□□)	신 용 등 급 (은행자체 등급)	
자 금 용 도		설 립 일	
주 생 산 품		사업자등록번호	
상시종업원수	명	법인등록번호	
매 출 액	백만원	자 기 자 본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납입자본금)	(　　백만원)

Ⅲ. 첨부서류

1. 대출금원장(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등) 1부.
4. 기타 한국은행이 요청한 서류. 끝.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

(년 월중)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 귀하

은행 부(점)장 (인)

(백만원, 연%)

신청정보				업체현황										대출내역								
일련번호	기관코드	각행 관리번호[1]	신청사유[2]	지원부문[3]	지원부문여부[4]	신용등급[5]	업종[6]	업체소재지[7]	업체명	사업자구분[8]	법인등록번호[9]	사업자등록번호[10]	대표자성명	자금구분[11]	취급점포명	취급점소재지[7]	대출일[12]	만기일[13]	대출기간	대출금액	금리[14]	채권보전[15]

주 : 1) 개별 대출건에 대한 고유 계좌번호, 업체당 "신규취급실적" 건별로 기재(업체당 신규취급실적이 한건 이상인 경우 건별로 관리번호 부여)

2) "신규" / "대환" / "만기연장"으로 구분하여 기재("대환" 또는 "만기연장"으로 기재한 경우 취급실적 변동보고서에 기존 취급분의 변동사유를 "만기상환"으로 하여 반드시 보고)

3) 지원부문별 코드는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을 참조하여 기재

4) 일반지원부문 해당시 "0", 전략지원부문 해당시 "1",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이 일반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으로 간주된 경우 "2",
특별지원부문 해당시 "3", 특별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이 일반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으로 간주된 경우 "4"로 기재

5) 은행 자체 신용등급을 기재, 금융기관이 SOHO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이외에 별도의 신용등급을 부여할 경우 "SOHO"라고 표시

6)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최종개정분) 5자리 숫자 기재

7) 광역시 지역은 시 단위, 일반 시 및 군 지역은 도/시·군 단위로 기재 < 예 : 대전, 경남양산 >

8) "개인" / "법인" 으로 구분하여 기재

9) "-" 생략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란으로 남겨둠)

10) "-" 생략

11) "시설" / "운전" 으로 구분하여 기재

12) 신청사유가 "대환"인 경우 대환일, "만기연장"인 경우 실제 기한연장일을 기입

13) 신청사유가 "대환" 및 "만기연장"인 경우 대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 새로이 산정된 상환기일

14) 대출취급시 적용금리를 기재(소수 둘째자리수), 단, 이차보전대출의 경우 이차보전금리를 포함한 금리를 기재

15) "순수신용"(개인 및 법인에 의한 보증대출 포함) / "담보" / "보증"(신용보증기관 및 정부 보증) / "MOU보증" / "혼합"으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년 월중)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 귀하

은행 부(점)장 (인)

(백만원, 연%)

변동전 보고내역							변동 보고내역						
기관 코드	각행 관리번호[1]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자금구분	취급 점포명	변동전 잔액	변동 일련번호[2]	변동사유[3]	변동사유 발생일[4]	변동 처리일[5]	변동금액	변동후 잔액	비 고

주 : 1) 변동이력 관리를 위해 기존취급건의 각행 관리번호를 기입

2) 개별 대출건에 대해 변동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변동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

3) “만기상환”(“대환” 또는 “만기연장” 건도 기존 취급분은 “만기상환”으로 처리) / “중도전액상환” / “중도일부상환” / “지원종료” / “휴폐업” / “최종부도” /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기타의 경우 비고란에 상세사유를 기재

4) 만기일자, 상환일자, 휴폐업일, 최종부도일 등(다만, 지원기간 종료로 한국은행의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로 기재)

5) 보고 대상월의 처리일자를 기입 < 예 : 3월 취급실적 변동보고서는 3월의 처리일자만 기재 >